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11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최수진 · 곽규택 · 박수민
김선교 · 김은혜 · 박충권
성일종 · 김기현 · 한지아
강대식 · 배준영 · 서지영
구자근 · 김태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의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상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하여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통신판매중개자의 모니터링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방법 및 이행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4(통신판매중개자의 모 니터링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 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물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 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 상·방법 및 이행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6조의2(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 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u>

제2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2.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③ (생 략)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